

[일련번호 : 1]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초과근무 운영 준수사항 미준수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복무를 관리하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1.19.)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한 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50조(직장이탈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2(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 수당) 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5호, 2024.8.29./ 제276호, 2024.1.19.)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정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정액분 포함)을 지급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따라서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등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 A은 2024. 8. *(토) *** ** 안내 및 업무 처리 사유로 초과근무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출근인식 후 이석하여 다른 직원이 퇴근하며 경비한 사무실에 경비를 해제하고 퇴근인식 하였으며,

위와 같이 초과근무시간 중 이석하였음에도 출·퇴근 인식한 내역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정산되어, 초과근무 인정시간 133분에 따른 수당 34,81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초과근무수당 환수금액(34,810원)과 5배의 가산징수 금액(174,050원)을 대상자가 (예산편성부서의 고지서 등에 의거) 납부하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